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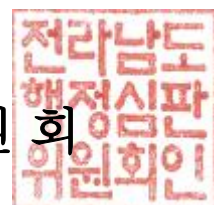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전남행심 제2021-213호 직접지원사업비 과오지급액 환수처분 및 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③ 주 소		
대 리 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군수	⑦ 참 가 인	
⑧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⑨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11. 청구인에게 한 직접지원사업비 과오지급액 ○○○원 환수처분 및 대상자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1. 10. 25.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이 유

【제2021-213호, 직접지원 사업비 과오지급액 환수처분 및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계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인 청구외 ○○○의 배우자이다.

청구외 ○○○는 2012. 3. 5. ○○군에서 ○○시 ○○구로 전출하였고, 2012. 3. 11. ○○시 ○○구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청구외 ○○○가 소유하였던 상수원보호구역 6필지의 토지는 ○○군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청구인이 상속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6. 25. 청구외 ○○○에서 청구인으로 ○○○수계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를 변경하고, 직접지원사업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에서 2020. 2. 25.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 다수의 과오지급자를 적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2020. 11. ~ 2020. 12. ○○○유역환경청과 피청구인은 자체 점검하였고, ○○○유역환경청은 2021. 2. 2. 피청구인에게 직접지원사업비 과오지급액 반납계획 제출을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6. 11. 청구인에게 직접지원사업비 과오지급액 ○○○원 환수처분 및 대상자제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1. 7.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1. 6. 11. 청구인에게 한 직접지원사업비 과오지급액 ○○○ 원 환수처분 및 대상자제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 1) 청구외 ○○○는 ○○군으로부터 불과 1주일 전출하였으며, 사망으로 인해 재전입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가혹하다.
- 2) 청구인은 청구외 ○○○가 ○○군으로 전출할 때에도 같이 전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 사망 후에 청구외 ○○○가 소유하였던 ○○○ 수계법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6필지의 토지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군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된다.
- 3) 청구인은 수몰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떠날 의사가 없다. 청구인은 수입이 전혀 없고, 직접지원사업비가 기본 생활유지 수단이었는데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혹하다.

나. 피청구인

- 1) ○○○수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외 ○○○는 2012. 3. 5. ○○군에서 ○○시 ○○구로 전출한 후 6개

월 이내에 재전입하지 않아 ○○○수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아니게 되었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자로부터 그가 소유한 토지를 상속한 청구인은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니다.

2) 청구인이 청구외 ○○○가 소유하였던 ○○○수계법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6필지의 토지를 상속하여 현재까지 ○○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청구외 ○○○는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자이므로 그가 소유한 토지를 상속한 청구인은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니다.

4. 관계 법령

- 1) ○○○수계법 제2조, 제21조
- 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수계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인 청구외 ○○○의 배우자이다.
- 2) 청구외 ○○○는 2012. 3. 5. ○○군에서 ○○시 ○○구로 전출하였고, 2012. 3. 11. ○○시 ○○구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3) 청구외 ○○○가 소유하였던 상수원보호구역 6필지의 토지는 ○○군에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 청구인이 상속하였다.
- 4) 피청구인은 2012. 6. 25. 청구외 ○○○에서 청구인으로 ○○○수계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변경하고, 직접지원사업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다.

5)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에서 2020. 2. 25.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 다수의 과오지급자를 적발하였으며, 후속조치로 2020. 11. ~ 2020. 12. ○○○유역환경청과 피청구인은 자체 점검하였고, ○○○유역환경청은 2021. 2. 2. 피청구인에게 직접지원사업비 과오지급액 반납계획 제출을 요청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21. 6.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 청구인은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직접지원사업비 과오지급액 ○○○원을 납부하였다.

8) 청구인은 2021. 7. 2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 법령

가) ○○○수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또는 「수도법」 제7조제1항 및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을 것

2.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5.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6.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구 분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 2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간접지원사업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지원사업

시·군·구 지역	
비고	
1. 상수원관리지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주민과 제21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사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위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간접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 이상은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	

2) 판단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청구의 ○○○는 2012. 3. 5. ○○군에서 ○○시 ○○구로 전출하기 전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인 ○○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6필지의 토지를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수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4]에 따르면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수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

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이라고 규정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가 소유하였던 상수원보호구역 6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기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인 ○○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므로 ○○○수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4]에 따른 직접지원사업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이기 위해서는 ①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일 것, ②①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③②가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청구외 ○○○는 2012. 3. 5. ○○군에서 ○○시 ○○구로 전출한 상태에서 2012. 3. 11. ○○시 ○○구 ○○병원에서 사망하여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하지 못하였는 바, ○○○수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중 관할 시·군인 ○○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아니게 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4]에 따른 직접지원사업 대상자도 아니게 되었다.

청구외 ○○○가 소유하였던 상수원보호구역 6필지의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인 청구인으로서 청구외 ○○○가 ①수변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수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아닌 이상 이를 전제로 한 ②, ③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수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4]에 따른 직접 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청구의 ○○○는 불과 1주일 전출하였을 뿐이며, 사망으로 인해 재전입이 불가능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아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1주일 전출이라는 사실은 청구의 ○○○이 전출 후 1주일 만에 사망하여 결과적으로 1주일인 것일 뿐, 청구의 ○○○가 ○○군에서 전출하고 6개월 내 재전입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며,

또한 청구인은 수몰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접지원사업비가 기본 생활유지 수단이어서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대로라면 청구인은 ○○○수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제3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일 수 있으며, 그렇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4]에 따른 간접지원사업 대상자로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과오지급된 전체 직접지원사업비 중 최근 5년간의 금액만 한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